

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연안여객선
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7 월 11 일

여 수 시 장 2023.07.11


여수시 조례 제1925호

붙임 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1부.

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이 기상여건 또는 여객선 운항 축소로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섬” 이란 여수시에 소재하는 「섬 발전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.
2. “섬 주민” 이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(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3. “숙박비”란 섬주민이 숙박시설 등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.
4. “1일 생활권” 이란 섬에서 육지에 나간 당일에 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이 하루에 2회 이상 운항되는 섬의 범위를 말한다.

제3조(숙박비 지원) ①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기상여건으로 연안여객선이 결항하거나 1일 생활권이 확보되지 않아 육지에 체류한 섬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
 2. 숙박시설 용도가 아니더라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시설에 한정한다)
 3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- ② 지원 금액은 숙박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하되, 1일 당 4만 원을 넘을 수 없으며 연간 지급액 한도는 여수시 내부 지침에 의한다.

제4조(지급대상) 숙박비 지원은 숙박일 기준으로 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

제5조(지원방법) ① 숙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숙박비 지원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작성하여 숙박일 이후 10일 이내로 구비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숙박비 지원 신청서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중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,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숙박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섬 주민 숙박비 지급 관리대장(별지 제2호 서식)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중단 등) 시장은 지원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당청구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된 날부터 1년간 지원을 중단하고 부당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숙박비 지원 신청서

신청자	성명			생년월일		
	주소			전화번호		
	입금계좌	은행명			예금주	
		계좌번호				
신청내역	숙박일	숙박시설명	이용요금(원)	섬에서 나온 날	섬으로 들어간 날	
		계				
신청금액						

20 년 월 일

<구비서류>

- 신청서 1부.
- 숙박비 납입 영수증 1부.
(현금영수증, 카드결제명세서, 세금계산서 등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된 서류)
- 연안여객선 예매표(예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) 1부.

신청인 성명 : (인, 서명)

여수시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섬 주민 숙박비 지급 관리대장